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6. 9 선고 2021나127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6. 9 선고 2021나1275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1017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6. 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1017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의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20. 접수제42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D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251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의 각 기재,”를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D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D에 대하여 850,691,314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을 상대로 한 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5. 17.경 D의 적극재산은

903,735,000원(E 토지 가액)인 반면, 소극재산은 F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2. 6. 7. 새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기존 주장,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변론재개신청서 등을 종합해보면, 그 주장·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김범진, 판사 이강은